

• 개 정 —————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부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23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u>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u> 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u>부천시지방공무원</u> <u>정원조례시행규칙</u>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5. 1. 16.

나. 제 안 자 : 부 천 시 장

다. 회부일자 : 1995. 1. 17.

라. 상정일자 : 1995. 1.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 제4802호 94. 12. 22 공포]에 의거
- 95. 3. 1자로 인천 광역시 부평구(종전의 북구) 서운동 일부가 부천시에 편입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 광역시 부평구 서운동 일부 : 오정구 삼정동에 편입
- 조정규모

(단위 : km²)

구 분			현 제	조 정	조 정 후	비 고
편입되는 지역	인 부 천 시 구		76.87	△ 0.0079	76.86	
	서 운 동		2.60	△ 0.0079	2.59	
편입 받는 지역	부 천 시		52.18	0.0079	52.19	
	오 정 구		19.08	0.0079	19.09	
	삼 정 동		1.91	0.0079	1.92	

3. 질의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4
의 결 년 월 일	95. 1. 27 (제34회)

제출년월일 : 1995. 1. 1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법률, 법률 제4802호 94. 12. 22 공포」에 의거
- 95. 3. 1자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중전의 북구) 서운동 일부가 부천시에 편입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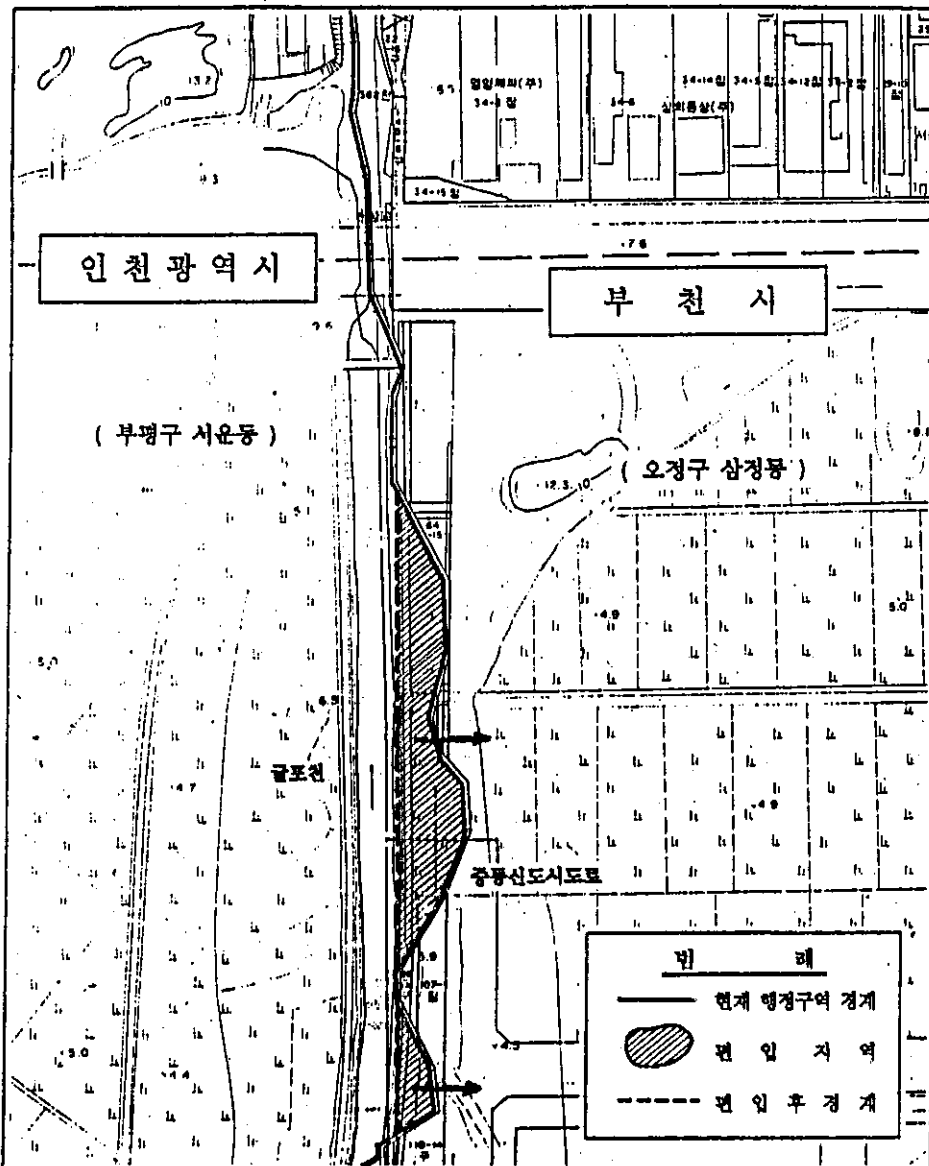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운동 일부 (신도시 도로부지 7,941㎡) 오정구 삼정동에 편입

□ 조정규모

(단위 : km²)

구 분				현 재	조 정	조 정 후
편입되는 지역	인 부	천 평	시 구	76.87	△ 0.0079	76.86
	서 운	동		2.60	△ 0.0079	2.59
편입 받는 지역	부 천	시		52.18	0.0079	52.19
	오 정	구		19.08	0.0079	19.09
	삼 정	동		1.91	0.0079	1.92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을 "부천시구및동"으로 한다.

제1조중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을 "부천시구및동"으로 한다.

제2조중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을 "부천시구및동"으로 하고 [별표]중 "자치구가 아닌 구및동"을 "구및동"으로 하며, 오정구 삼정동의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

구 명	동 명	관 할 구 역
오 정 구	삼 정 동	종전 오정구 삼정동과 종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운동 57-358~361, 65-1, 66, 66-1, 67, 68, 69, 69-1, 70, 70-1, 71, 71-1~3, 72, 72-1~2, 73, 73-1, 74, 74-1, 75-1~2, 76, 77, 78번지

신 · 구조문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 에관한조례	(제명)부천시구및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 동의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부천시구및동

현행			개정안		
제2조(명칭과구역)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조(명칭과구역)부천시구및동.....		
[별표] 중			[별표] 중		
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			구및동		
구 명	동 명	관 할 구 역	구 명	동 명	관 할 구 역
오정구	삼정동	○ 오정구 삼정동 일원 (신설)	오정구	삼정동	○ 종전 오정구 삼정동과 ○ 종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운동 57-358~361, 65-1, 66, 66-1, 67, 68, 69, 69-1, 70, 70-1, 71, 71-1~3, 72, 72-1~2, 73, 73-1, 74, 74-1, 75-1~2, 76, 77, 78번지

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점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5. 1. 16.
- 나. 제안자 : 부 천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5. 1. 17.
- 라. 상정일자 : 1995. 1. 26.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